



미래에셋 TIGER 생활필수품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A8065]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 TIGER 생활필수품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

집합투자기구 특징	1. 투자대상자산 :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 에프앤가이드(FnGuide)가 발표하는“에프앤가이드 생활필수품 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주) ☎1577-164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을 두지 않음
효력발생일	2018년 2월 27일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Class)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투자신탁	-	-	-	-

종류(Class)	보수(연, %)			
	지정참가회사 보수	운용 등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투자신탁	0.07	0.33	0.06	0.46
※ 주식사항	* '총보수·비용'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각 보수의 지급 시기 : 매 3개월 후급 *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수 또는 법인투자자의 설정청구	환매 방법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도 또는 법인투자자의 환매청구
기준가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계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a href="http://investments.miraeasset.com">http://investments.miraeasset.com</a> ) · 한국거래소 ( <a href="http://www.krx.co.kr">www.krx.co.kr</a> ) 인터넷 홈페이지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에프엔가이드(FnGuide)가 발표하는 “에프엔가이드 생활필수품 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에프엔가이드(FnGuide)가 발표하는 “에프엔가이드 생활필수품 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합니다.

#### ※ 기초지수 : 에프엔가이드 생활필수품 지수

- 산출기관 : 에프엔가이드(FnGuide)
- 대상종목 :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중, FICS(FnGuide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분류 체계 Industry 기준으로 ‘음료’, ‘식료품’, ‘가정생활용품’, ‘개인생활용품’에 속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 3개월 일평균 시가총액 150억원 이상
  -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
  - 유동주식비율 10% 이상
- 구성종목 : 대상종목 중, 유동주식비율 반영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계산된 비중이 누적 편입비중의 95% 이상이 되도록 편입. 단, 지수 구성종목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유동주식비율 반영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편입하여 10종목으로 지수 구성 (단일 종목 비중은 25%로 제한)
- 정기변경 : 매년 6월과 12월 KOSPI200 주가지수 선물의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주 첫 영업일
- 기준일 및 기준지수: 2001년 1월 2일 기준, 1,000 P
- 해당지수에 대한 정보는 <http://www.fnindex.c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3.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4.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2018.01.31)		성명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자산규모	

윤주영	1971	본부장	98개	86,403억원	(97년~98년) 한진선물 국내선물팀
					(01년~05년) 유리자산운용 인덱스운용팀/퀀트팀
					(05년~11년) 유리자산운용 인덱스운용팀/ETF운용팀/퀀트분석팀
					(11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Index/ETF운용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규모: 해당사항없음
					개수: 해당사항없음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연도 (기간)	최근 1년차 17.02.01~'18.01.31	최근 2년차 16.02.01~'17.01.31	최근 3년차 15.02.01~'16.01.31	최근 4년차 14.02.01~'15.01.31	최근 5년차 13.02.01~'14.01.31
투자신탁	11.14	-24.44	38.54	49.9	-10.05
비교지수	11.18	-24.82	38.74	49.73	-10.23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종목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는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요소 :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운용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환율변동(해외투자시), 운용/판매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기초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기초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되었으며,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이 **24.30%**로서 위험등급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매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 수익률과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포트폴리오 납입자산내역 작성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것이지만,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과 때로는 추적오차의 정도가 상당수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1) 과세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내국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과세 및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7.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미래에셋 TIGER 생활필수품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A8065)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또는 “ETF”라고 함)(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추적대상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판매)예정금액 :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판매)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판매)장소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한국거래소(www.krx.co.kr) 및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법인에 한하여 지정참가회사에서 모집 청구 (설정단위인 <b>20,000좌</b> 단위로 설정 청구 가능)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 상장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1) 상장 증권시장 : 한국거래소

(2) 상장일 :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장예정

(3) 거래방법 및 거래가격 :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4) 상장요건

- 규모요건 :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 수가 10만 증권 이상일 것

- 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자가 1사 이상일 것
  - 자산의 구성요건
    - ①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납부가 가능한 경우
      - ▶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100분의 95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하며 100분의 50이상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 ▶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51조에 따라 매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이상 편입할 것
    - ② 위의 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 ▶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16조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투자신탁 수익증권(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함)가 0.9 미만인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함.
  - (2)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3)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 회원이 없는 경우
  - (4) 이 투자신탁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규정에서 정한 해당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 (7) 이 투자신탁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8)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9)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수익증권의 상장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등은 이 투자설명서의 작성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의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미래에셋 TIGER 생활필수품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A806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12.01.12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2012.01.16	최초설정 (최초상장 : 2012.01.17)
2012.03.26	집합투자업자 합병(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미래에셋자산운용(주)) 투자신탁 명칭변경(舊 미래에셋맵스 TIGER 생활소비재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12.11.26	분배금지급기준일 변경
2015.07.10	투자신탁명칭 변경(舊 미래에셋 TIGER 생활소비재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15.09.07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한국예탁결제원→미래에셋펀드서비스)
2016.07.02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5단계 체계→6단계 체계)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2016.07.30	판매/환매 기준시간 변경
2017.04.28	기초지수 명칭 변경(에프앤가이드 생활소비재 지수 → 에프앤가이드 생활필수품 지수)

3. 신탁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8.01.31 현재)

가. 운용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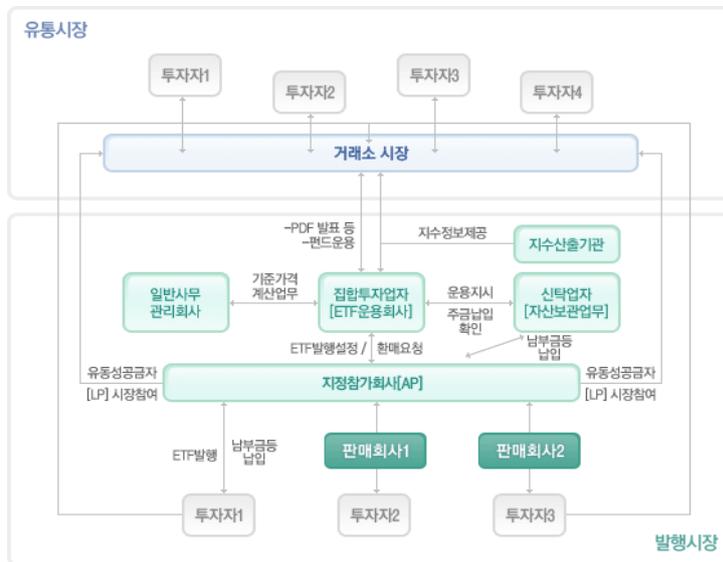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자산규모	

윤주영	1971	본부장	98개	86,403억원	(97년~98년) 한진선물 국내선물팀
					(01년~05년) 유리지산운용 인덱스운용팀/퀀트팀
					(05년~11년) 유리지산운용 인덱스운용팀/ETF운용팀/퀀트분석팀
					(11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Index/ETF운용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규모: 해당사항없음		개수: 해당사항없음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TF는 기준가격에 따라 설정 해지가 이루어지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ETF수익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함께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일반적으로 법인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며, 설정해지를 위한 특정단위로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발행시장에서 ETF 설정을 원하는 경우 “AP”라고 불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ETF 설정에 필요한 현금등을 납입하고 그 대가로 ETF수익증권을 받게됩니다. 이렇게 수령한 ETF 수익증권을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시장에서는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 / 매수호가의 경합으로 ETF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LP라고 불리는 유동성공급자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돕습니다.

※ ETF의 시장참가자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집합투자업자	ETF 운용 주체 지수추적을 위한 펀드자산의 설계 및 구성종목 교체
지정참가회사(AP)	ETF의 설정 및 환매신청 창구 역할 주식바스켓(CU) 구성 의무 ETF와 현물주식 시장간의 차익거래 수행
유동성공급자(LP)	AP역할 동시 수행

	시장에서 호가제공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역할 수행 (집합투자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 체결기관에 한함)
신탁업자	ETF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를 대신하여 ETF 사무처리 업무 수행(NAV계산, ETF 설정, 환매 정산금액의 산출)
투자자	ETF 매매(개인 및 법인투자자) ETF 설정 및 환매(법인투자자)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에프엔가이드(FnGuide)가 발표하는 “에프엔가이드 생활필수품 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8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함)
②	채권	2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④	환매조건부 매도	보유하는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증권의대여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⑥	증권의 차입	20% 이하	제1항에 해당하는 주식의 차입
⑦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⑧	단기대출/금융기관 예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운용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 \*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③, ④, ⑤, ⑥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예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 투자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추적대상 지수관련 투자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지수산출기관의
	납입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적대상 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

- \*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동일종목투자”, “동일법인투자”, “파생상품 매매”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에프엔가이드(FnGuide)가 발표하는 “에프엔가이드 생활필수품 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합니다.

**※ 기초지수 : 에프엔가이드 생활필수품 지수**

- 산출기관 : 에프엔가이드(FnGuide)
- 대상종목 :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중, FICS(FnGuide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분류 체계 Industry 기준으로 ‘음료’, ‘식료품’, ‘가정생활용품’, ‘개인생활용품’에 속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 3개월 일평균 시가총액 150억원 이상
  -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
  - 유동주식비율 10% 이상
- 구성종목 : 대상종목 중, 유동주식비율 반영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계산된 비중이 누적 편입비중의 95% 이상 이 되도록 편입. 단, 지수 구성종목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유동주식비율 반영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편입하여 10종목으로 지수 구성 (단일 종목 비중은 25%로 제한)
- 정기변경 : 매년 6월과 12월 KOSPI200 주가지수 선물의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주 첫 영업일
- 기준일 및 기준지수: 2001년 1월 2일 기준, 1,000 P
- 해당지수에 대한 정보는 <http://www.fnindex.c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ETF)에 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홈페이지주소	비 고
지수관련정보	<a href="http://www.fnindex.co.kr">http://www.fnindex.co.kr</a>	지수발표기관(에프엔가이드)
PDF내역	<a href="http://www.tigeretf.com">http://www.tigeretf.com</a> '투자정보'란	TIGER ETF 전용 홈페이지
ETF관련 일반정보	<a href="http://www.tigeretf.com">http://www.tigeretf.com</a> <a href="http://etf.krx.co.kr">http://etf.krx.co.kr</a>	TIGER ETF 전용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ETF전용 홈페이지

**※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이론적으로 추적대상지수에 포함된 주식을 해당 비율만큼 모두 포함하는 완전복제방법을 선호하며, 실제로 완전복제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나, 추적대상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중 부도 가능성,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대상 종목군을 구성하고, 투자대상 종목군 중에서 추적오차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Sampling) 방식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적대상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적대상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

달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 투자증권의 대여 등을 동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조정

이 투자신탁은 그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신탁재산 내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하여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입니다.

- ▶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시
- ▶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시
- ▶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구성종목의 부도 발생시
- ▶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구성종목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 ▶ 기타 이상과 같은 사유들에 준하는 중요한 사유 발생시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집합투자기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 수익률과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포트폴리오 납입자산내역 작성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것이지만,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과 때로는 추적오차의 정도가 상당수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추적대상지수의 상한가증치에 따른 종목당 최대편입비 초과분에 대한 최적화(Optimization) 과정에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상장수수료등) 등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정(正)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 지수 구성종목의 정기 또는 특별변경 발생으로 인한 구성종목의 교체 또는 비율변경은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위험종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개별위험	종목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위험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위험종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인덱스투자 위험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요소 :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운용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환율변동(해외투자시), 운용/판매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
인덱스투자 위험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TF투자 위험	ETF 상장폐지 위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익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ETF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여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에서의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ETF투자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자는 ETF를 보유하게 되면 당해 ETF가 상장된 거래소(예 한국

위험	투자자금 회수관련 위험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ETF가 상장된 거래소에서 ETF의 거래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에게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 및 수량만큼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 위험	업종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산업(업종)에 속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산업(업종)의 환경 및 경영여건 등은 항상 급변동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자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위험종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위험	투자자금 회수위험 (유동성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위험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다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기준가격 오류 등)	운용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관련 위험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세금관련 위험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

		<p>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b>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b>할 수 있습니다.</p> <p>*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p>
상장거래 위험	가격괴리 위험	<p>집합투자증권을 상장시킨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 좌당 기준가격(NAV)과는 통상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이 적거나,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장기간 제한되어 있는 경우,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의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p>
상장거래 위험	거래부진 위험	<p>집합투자증권을 상장시킨 경우에도 당해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 및 수량만큼 투자자금을 투자하거나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일반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은 다른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량이 활발하지 못한 경향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상장거래 위험	상장폐지 위험	<p>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일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거래량 등의 기준 미달) 상장폐지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p>
해지/해산 위험	투자신탁 해지위험	<p>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p>
잠재적 이해상충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잠재적 이해상충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p>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p> <p>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 3 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p> <p>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p>
소프트 달러 수수료	소프트 달러 수수료	<p>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p>

(Soft-Dollar Commission)	(Soft-Dollar Commission)	<p>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p> <p>*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기구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p>
--------------------------	--------------------------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변동성이란 집합투자기구 수익률이 측정기간 내 평균수익률과 차이를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표준편차)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변동성 값이 클수록 수익률 변동폭이 크고, 위험수준이 높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은 **24.30%**로서 위험등급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매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급	1 (매우 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 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설정을 통한 매입]**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
- 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2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현금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1) 설정단위 (Creation Unit)**

설정단위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 신청하거나, 수익자가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하는 단위입니다.

-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2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20,000좌 또는 그 정배수(40,000좌, 60,000좌 등)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설정단위의 변경 예>

- 이 투자신탁을 최초 설정할 당시의 추적대상지수가 1,000pt일 경우,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해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은 0.2억(1,000pt × 승수 1 × 설정단위 20,000좌)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추적대상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pt가 될 경우에는 투자자가 납입하여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이 0.4억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단위 평가금액의 상승은 이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익증권의 수를 10,000좌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산금액 (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정산금액 산출 : 설정청구일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신탁 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 ▶ 정산일 :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 ▶ 정산금액 발생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포트폴리오납입자산 작성시 반영
- 익일의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작성시 반영 등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 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

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포트폴리오납입자산 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수탁회사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설정청구의 효력 등**

-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유가증권 및 현금을 말합니다)을 납입(납입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설정을 청구하는 날(이하 “설정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 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함)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 상기 나.의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입(이하 “대납현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투자자로부터 동 정산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받아 정산)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지정참가회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납현금 산출 : 설정청구일의 미구성자산의 증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
  -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상기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동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 반환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함.
- 라. 투자자가 상기 ‘나’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포트폴리오납입자산과 일치하도록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공동계좌를 사용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주의사항**

- 상기 라.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납부금등을 매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부금등의 매매결과가 항상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유가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함

- 마.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마.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입금등을 매매한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 납부금등의 매매가액 정산**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한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의 평가가액보다 적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사. 상기 가. 내지 바.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청구일 증가 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아. 상기 가. 내지 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주식의 교체 필요시**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교체를 위하여 수탁회사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 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에 수익증권 설정 청구

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설정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지 않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의 설정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의 영업일에 당해 설정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영업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의 내역과 기존에 설정청구를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4) 투자신탁의 설정절차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표]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정산금액의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청구	인수도명세확정 및 투자자 통보	수탁회사로 납부금등 이체
집합투자업자	포트폴리오 납입자산통보 (거래소등)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수익증권 발행(한국예 탁결제원 일괄예탁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한국예탁결제원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수탁회사				납부금등의 납입확인

**가. 설정청구일 직전영업일(T-1일)**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나. 설정청구일 (T일)**

-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한 자산(납부금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 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 만일,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 포트폴리오납입자산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금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만든 예탁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

력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 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설정청구일에 청구된 설정청구분을 기초로 익영업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청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익영업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추가 상장신청을 합니다.

**라. 설정일 (T+2일)**

- ▶ 지정참가회사와 수탁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수익증권의 일괄예탁을 의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하게 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 입고시간을 T+2일 한국거래소의 영업개시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수익증권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매**

**[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지정참가회사에서 투자신탁 환매 청구]**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해지를 합니다.
-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2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해지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사항**

가. 수익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 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자가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가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라. 상기 가. 내지 다.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로서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 수익자가 상기 가. 내지 라.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으로,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의 환매청구일 증가 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 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 환매자산 지급방법의 변경

상기 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의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유가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바.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유가증권등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사. 상기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환매불가사유”)로 인하여 상기 마.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아. 상기 사.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합니다. 이 경우 동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표]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	인수도명세확정 및 투자자 통보	투자자계좌에서 수익증권인출 및 자산입고
집합투자업자	포트폴리오 납입자산통보	환매내역 확인 및 승인		투자신탁 일부해지
한국예탁결제원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b>수탁회사</b>				지정참가회사로 자산 이체 및 이체내역확인
-------------	--	--	--	------------------------

**가. 환매청구일 직전영업일 (T-1일)**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 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나. 환매청구일 (T일)**

- ▶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의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 한 경우를 포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합니다.
-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한국예탁결제원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다.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익영업일 (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변경상장신청을 합니다.

**라. 환매일 (T+2일)**

- ▶ 지정참가회사와 수탁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합니다.
- ▶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게 되고, 수익자는 그 즉시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수탁회사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나.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시스템에 의하여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가. 상기의 환매 관련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나. 아래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 필요시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수탁회사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함)로부터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에 수익증권 환매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지 않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input type="checkbox"/>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investments.miraeasset.com">http://investments.miraeasset.com</a> ), 한국거래소( <a href="http://www.krx.co.kr">www.krx.co.kr</a> ),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공고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p>사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비치하고 한국거래소에 동 기준가격을 공시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기준가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방문하시어 기준가격을 요청하거나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을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게시·공고하거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p>
--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 지분증권 (주식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은 평가 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의함. (예상배당금의 추정은 증권사 추정 예상배당금과 당사가 추정한 예상배당금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정))
비상장 지분증권 (주식 등)	비상장지분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 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함.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이 발표하는 가격에 의함.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함.
외화표시상장증권	외화표시 상장증권은 당해 증권이 상장된 증권시장의 최종시가에 의함.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의함.
외국집합투자증권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에 의함.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의함.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은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함. 다만 그러한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타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거나 매각이 제한되는 등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투자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27%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다만, 최초 보수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의 보수계산기간은 그 익일부터 매 3개월 간을 의미함.
지정참가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7%	
신탁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	
일반사무관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6%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46%	-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순자산총액의 연 0.46%	-

\*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입니다.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과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1,690
금융비용	-
발행분담금	-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수익증권 종류	구분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투자신탁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7	148	259	58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7	148	259	58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 (1) 이익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 (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

-지급기준일 : 매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대상 수익자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합니다.

③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에  
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이란?**

이 투자신탁은 일반 투자신탁과 달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시 당해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합니다. 그 대신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배당수익을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으로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시기도 불구하고 집합투  
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운용목적(추적대상지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 실현)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  
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예외의 경우**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3) 상환금등의 지급**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현금화하여 헤지기준  
일의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기한 : 신탁계약해지 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 지급 순자산가치 : 상환금을 지급하는 직전일의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
- 자산의 형태 : 당해 잔존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
- 대상 수익자 : 신탁계약해지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상환금 지급처 : 수익자의 위탁매매계좌(신탁계약해지 기준일에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보유 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가 개설되어 있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서 상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  
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  
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아래의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의 면제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 원

예 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 원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4기 ('15.01.01~'15.12.31)	해당사항없음 주1)
5기 ('16.01.01~'16.12.31)	해당사항없음 주1)
6기 ('17.01.01~'17.12.31)	해당사항없음 주1)

주1)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0조 및 법 시행령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적용이 면제되었습니다.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 목	6기 ('17.12.31)	5기 ('16.12.31)	4기 ('15.12.31)
운용자산	10,421	9,592	5,229
증권	10,413	9,565	5,21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8	26	13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88	73	22
자산총계	10,510	9,666	5,25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2	11	6
부채총계	12	11	6
원본	5,043	5,043	2,076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5,454	4,611	3,168
자본총계	10,497	9,654	5,245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6기 ('17.01.01~'17.12.31)	5기 ('16.01.01~'16.12.31)	4기 ('15.01.01~'15.12.31)
운용수익	1,022	-2,515	3,047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94	78	27
매매/평가차익(손)	920	-2,597	3,018
기타수익	7	2	1
운용비용	45	35	30
관련회사보수	39	30	26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5	4	3
당기순이익	977	-2,550	3,017
매매회전율 (%)	78	42	12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 목	6기 ('17.12.31)	5기 ('16.12.31)	4기 ('15.12.31)
운용자산	10,421	9,592	5,229
증권	10,413	9,565	5,216
주식	10,413	9,565	5,216
ETF	0	0	0
채권	0	0	0
매입어음	0	0	0
수익증권	0	0	0
외화유가증권	0	0	0
기타유가증권	0	0	0
과생상품	0	0	0
주가지수매입옵션	0	0	0
ELS	0	0	0
ELW	0	0	0
DLS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부동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8	26	13
예금	8	26	13
외화예금	0	0	0
CD	0	0	0
정기예금	0	0	0
위탁증거금	0	0	0
청약증거금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콜론	0	0	0
환매조건부채권	0	0	0
기타자산	88	73	22
미수이자	0	0	0
미수배당금	88	73	21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0	0	0
선물정산미수입금	0	0	0
선납(선급)원천세	0	0	0
기타	0	0	0
자산총계	10,510	9,666	5,251
운용부채	0	0	0
매도유가증권	0	0	0
미지급주식	0	0	0
미지급채권	0	0	0
미지급ETF	0	0	0
주가지수매도옵션	0	0	0
기타부채	12	11	6
미지급보수	10	9	5
미지급해지금	0	0	0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미지급원천세	0	0	0
기타부채	1	1	1
부채총계	12	11	6
원본	5,043	5,043	2,076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5,454	4,611	3,168
당기순이익	0	0	0
감자차익/차손	0	0	0
자본총계	10,497	9,654	5,245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 목	6기 ('17.01.01~'17.12.31)	5기 ('16.01.01~'16.12.31)	4기 ('15.01.01~'15.12.31)
운용수익	1,022	-2,515	3,047
투자수익	101	81	28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94	78	27
기타수익	7	2	1
매매이익	1,461	71	3,089
주식매매이익	1,461	71	3,089
파생상품매매이익	0	0	0
채권매매이익	0	0	0
외환거래이익	0	0	0
유동자산매매이익	0	0	0
ETF매매이익	0	0	0
수익증권매매이익	0	0	0
기타매매이익	0	0	0
매매손실	540	2,669	70
주식매매손실	540	2,669	70
파생상품매매손실	0	0	0
채권매매손실	0	0	0
외환거래손실	0	0	0
유동자산매매손실	0	0	0
ETF매매손실	0	0	0
수익증권매매손실	0	0	0
기타매매손실	0	0	0
운용비용	45	35	30
위탁보수비	26	20	17
판매보수비	6	5	4
수탁보수비	2	2	1
사무관리보수비	2	2	1
자문보수비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5	4	3
당기순이익	977	-2,550	3,017
비용	586	2,704	100
수익	1,563	153	3,118
천좌당 순이익(원)	1,430,367	-5,406,718	7,521,20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채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5.01.01~ '15.12.31	0.4	5,850.7	0.2	4,147.7	0.4	7,770.5	0.2	2,227.9	0
16.01.01~ '16.12.31	0.2	5,245.0	0.5	9,777.9	0.1	2,817.8	0.6	12,205.2	0
17.01.01~ '17.12.31	0.6	9,654.6	0.4	6,576.4	0.4	6,710.4	0.6	9,520.7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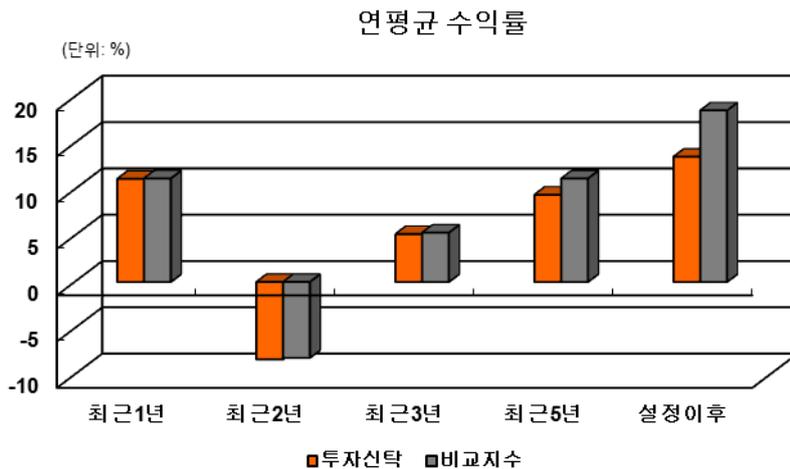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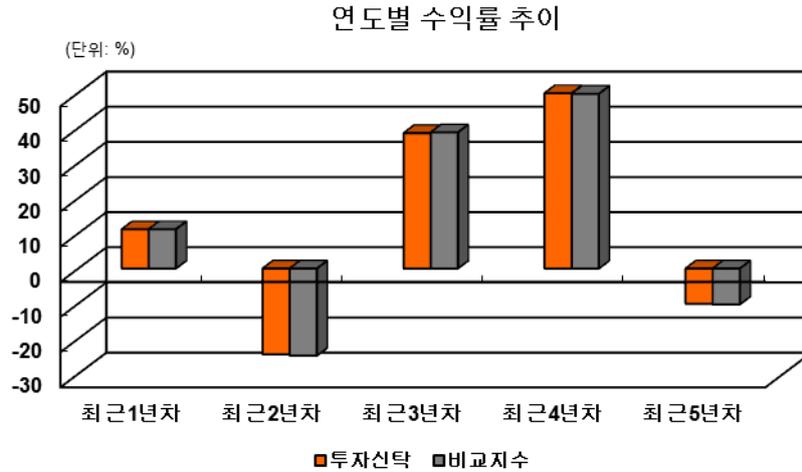
연도 (기간)	최근1년 17.02.01~'18.01.31	최근2년 16.02.01~'18.01.31	최근3년 15.02.01~'18.01.31	최근5년 13.02.01~'18.01.31	설정이후
투자신탁	11.14	-8.35	5.17	9.42	13.52
비교지수	11.18	-8.2	5.32	11.17	18.52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연도 기간	최근1년차 17.02.01~'18.01.31	최근2년차 16.02.01~'17.01.31	최근3년차 15.02.01~'16.01.31	최근4년차 14.02.01~'15.01.31	최근5년차 13.02.01~'14.01.31
투자신탁	11.14	-24.44	38.54	49.9	-10.05

비교지수	11.18	-24.82	38.74	49.73	-10.23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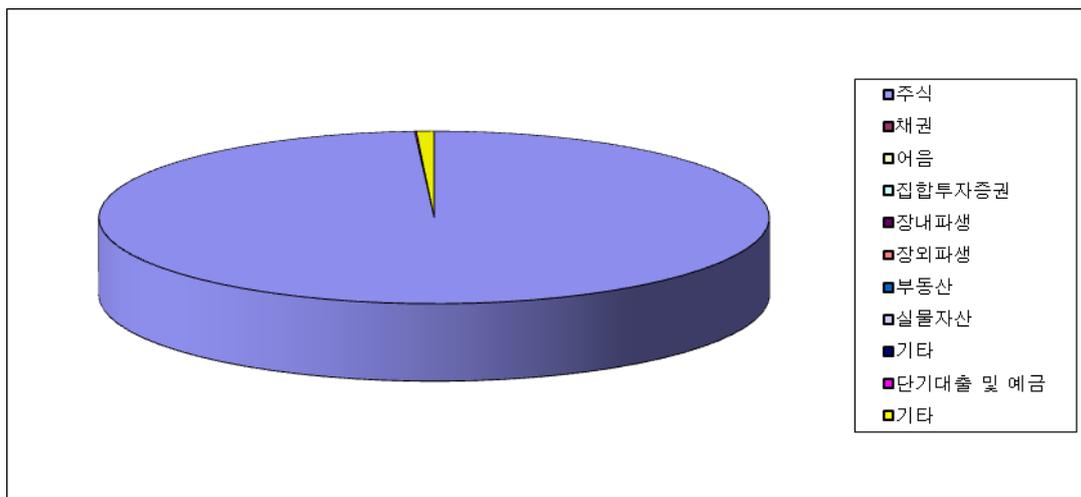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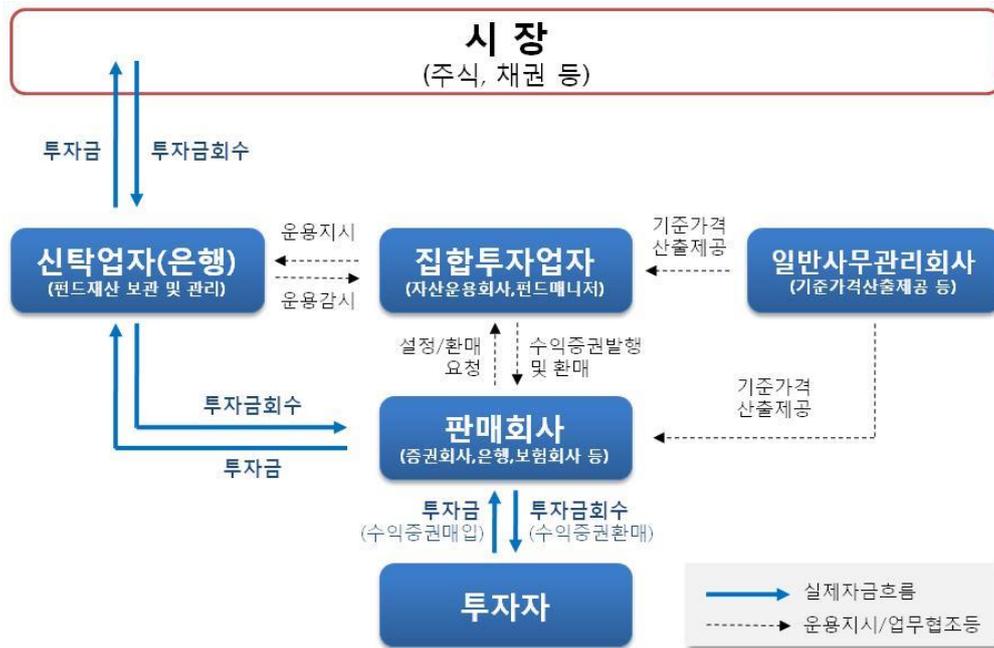
\*비교지수는 "에프앤가이드 생활필수품 지수"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백만, %, 2017.12.31 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한국)	10,413	0	0	0	0	0	0	0	0	8	89	10,510
	99.0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8	0.85	
합계	10,413	0	0	0	0	0	0	0	0	8	89	10,510
	99.0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8	0.85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홈 페이지 주소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자 본 총 계	1조 3,406억원 (2016년 12월 31일기준)
주 요 주 주 현 황	박 현 주 외
회 사 연 혁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현황	-신탁업자: 우리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일반사무관리회사 :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2016.12.31	2015.12.31	항 목	16.01.01~16.12.31	15.01.01~15.12.31
현금 및 예치금	831	825	영업수익	2,488	2,332
유가증권	18,774	13,441	영업비용	1,750	1,515
대출채권	23	14	<b>영업이익</b>	<b>739</b>	<b>817</b>
유형자산	11	13	영업외수익	1,347	848
기타자산	857	705	영업외비용	483	665
<b>자산총계</b>	<b>20,496</b>	<b>14,998</b>	법인세차감전이익	1,603	1,001
예수부채	46	1	당기순이익	1,117	779
기타부채	7,044	3,707			
<b>부채총계</b>	<b>7,090</b>	<b>3,708</b>			
자본금	678	678			
자본잉여금	246	2,466			
기타포괄손익누계	448	-575			
이익잉여금	9,814	8,722			
<b>자본총계</b>	<b>13,406</b>	<b>11,290</b>			

**라. 운용자산 규모(2017.12.31 현재 / 단위: 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 자산	PEF	투자 일임 기타	총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소계								
수탁고	23,614	4,550	3,792	29,116	61,072	1,462	5,350	8,221	23,437	2,846	623	-	103,01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는 당해 투자신탁에서 지급하며, 위탁의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신한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대경빌딩 ☎ 02-756-0505
홈 페이지 참조	www.shinhan.com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

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펀드서비스(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4층 (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 02-769-7800
홈 페이지 참조	fs.miraeasset.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홈 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koreaap.com">www.koreaap.com</a>

회 사 명	나이스피앤아이(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홈 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nicepni.co.kr">www.nicepni.co.kr</a>

회 사 명	KIS채권평가(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33

홈 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bond.co.kr">www.bond.co.kr</a>
회 사 명	에프엔자산평가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 02-721-5300
홈 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fnpricing.com">www.fnpricing.com</a>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총회 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3)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간	매매처명	거래구분	자산구분	거래금액
15.01.01~15.12.31	미래에셋대우	위탁거래	주식	4,799,028,850
16.01.01~16.12.31	미래에셋대우	위탁거래	주식	6,195,779,100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p>①선정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li> <li>-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li> <li>-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li> <li>-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li> </ul> <p>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li> <li>-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li> <li>-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li> </ul>

	<p>[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p> <p>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p> <p>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p> <p>다. 마케팅비용</p> <p>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p> <p>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p>
<장내과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매매대가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에프앤가이드 생활필수품 지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에게 라이선스 이용이 허가된 FnGuide의 서비스표입니다.

##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 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형펀드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펀드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로서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혼합/채권혼합형 펀드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서, 주식에 최대 50%이상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주식혼합형, 주식에 최대투자 가능비율이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상장지수펀드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왵	금리스왵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왵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 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신탁계약서(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능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 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은행등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